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고단 4426,2019고단842(병합),2019고단1593(병합) 판결 폭행,모욕,상해,모욕,폭행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8고단4426 폭행, 모욕

2019고단842(병합) 상해, 모욕

2019고단1593(병합) 폭행

피고인 A

검사 최혜진, 문승철, 노경은(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426」

피고인은 2018. 9. 19. 16:2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6(구의동) 구의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B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 C(여, 24세)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왜 치고 지랄 이야, 요즘 메갈 년들이 돌아 다닌다더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로 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19고단842」

1. 모욕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피고인은 2019. 2. 18. 14:40경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버스를 타고 서울 광진구 F 앞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바닥에 침을 뱉은 것을 닦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승객들이 타고 있는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창녀냐. 가방끈이 짧으니 버스기사나 해야 한다."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정차한 위 버스에 경찰관들이 탑승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593」

피고인은 2019. 3. 20. 14:5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문정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층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민원인용 PC 사용을 두고 피해자 G(q, 47M)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및 USB, CD
- 1. 진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모욕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었다. 위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던 공개된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다툼이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판시와 같이 욕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로 모욕하였으며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판사 박정길